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김경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

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 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2억원 이하"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	제20조(과징금) ①
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	
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억원 이하</u> 의 과징금을	<u>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u>
부과할 수 있다.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